

의안번호	2217814
의 퇴 인	김태선의원
회 답 일	2026.4.7.
추계번호	26B1738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의 발생 및 사용실태를 연 1회 수행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9억 5,000만원(연평균 1억 9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포장폐기물 및 1회용품 발생 및 사용 실태조사 (안 제10조의4)	190	190	190	190	190	950	190

주: 본 추계결과는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, 향후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 실시 여부, 실태조사의 방법,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의4(포장폐기물 및 1회용품 발생 및 사용 실태조사) 신설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발생 및 사용 실태를 연 1회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(제1항) 1. 제9조에 따른 포장폐기물 2. 1회용품 3. 그 밖에 폐기물의 발생 및 사용 억제에 위하여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	의무규정
		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(제2항) 1. 해당 폐기물의 사용량 변화, 재질 개선 또는 대체 제품 도입 여부 2. 유통·소비 단계에서 해당 폐기물의 사용 및 관리 실태 3. 그 밖에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0조의4(포장폐기물 및 1회용품 발생 및 사용 실태조사)	○	·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개정안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개정안 부칙과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의 발생 및 사용실태를 연 1회 수행할 경우, 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본 추계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에 따라 유사 연구용역 실시사례를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계함
 -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‘1회용품 저감정책 통계작성 및 관리방안 연구’ 용역에 1억 9,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, 포장폐기물 및 1회용품 등의 발생 및 사용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[표 2] 유사사례 관련 주요내용

(단위: 백만원)

과제명	수행기관	수행기간	계약 금액	주요내용
1회용품 저감정책 통계작성 및 관리방 안 연구	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, (재) 에코윌플러스	2023. 4.~ 2023.12.	190	·국내 1회용품 생산현황(업체현황, 생산규모 등), 1회용품 사용량(국내생산, 수출수입량 등) 조사(기존 연구를 토대로 통계정확도 제고, 표준화) ·업종별, 품목별, 재질별 1회용품 사용량 분석, 대체품목 생산소비 현황, 폐기물처리현황 및 대체품과의 환경영향 비교 검토 ·사용량 모니터링 등 정책관리 필요 1회용품 범위 및 정책방향 제시 ·국내·외 주요 기업의 1회용품 저감사례 및 저감통계 ·정책 대상자(소비자, 사업자, 공공기관)의 인식변화 및 준법의식 변화 통계 분석(주요 업종별 1회용품 줄이기 가이드라인 제시)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

-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은 추계 첫 해인 2027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며,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

□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의 발생 및 사용실태를 연 1회 수행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9억 5,000만원(연평균 1억 9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포장폐기물 및 1회용품 발생 및 사용실태조사 (안제10조의4)	190	190	190	190	190	950	190

주: 본 추계결과는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, 향후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 실시 여부, 실태조사의 방법,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, 향후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 실시 여부, 실태조사의 방법,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추가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